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 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 년 1월 28일

청 원 인

성 명 : 이유수 외 14인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유수 외 14인
건명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1월 28일

소개의견

본 청원인 ‘이유수 외 14인’은 제 18회 임시회의 & 청소년국회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입니다. 2016년 1월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입니다.

현재 sns상에서 퍼지는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 등을 포함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 증가하여 2006년 단지 17건이었던 교권 침해 신고건수가 현재 2015년 450건으로 10년동안 약 20배 증가하였지만, 기존의 법에서는 즉각적인 대처 방안이나 제한적인 유급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어 취지가 왜곡되어 교원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교권 침해 사례 절감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한신체적 폭력 방지를 위한 즉각적인 대처 방안의 수립과 학생 처벌 강화를 위해 ‘학생의 정신적·신체적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의 제정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소개의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자료 01> 연도별 교권침해 현황 (2006~2011),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現교육부)

2000년대 이후 체벌이 금지되고 상벌점제 제도가 들어왔지만 실효성이 없어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권위가 높아졌고 그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교권을 침해하는 사례만 늘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現 교육부) 자료조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교권 침해 사례는 17건에서 205건까지 10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로인한 문제를 증명하는 사례가 근래에 SNS에서 널리 확산된 소위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입니다.

2015년 12월 23일, 경기도 이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5명이 빗자루로 교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밀치는 등 폭행 및 명예훼손 사건이 발생하였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2016년 1월 22일 보석된 사례입니다. 이러한 교권침해 사건이 과거부터 수차례 발생해 왔고 교총에서는 교권의 신분과 안전을 보장해주기를 계속해서 요구하자 국회에서는 교권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올해 1월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교총에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초, 중, 고등교직원들 중 56.2%가 실질적이며 즉각적 제재 조치가 없어 교권 피해 시 어려움을 느끼고 그 점을 보완할 교권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현재의 법은 장기적이며 미온적인 제재

교권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단위:%)



<자료 02> 교권침해 시 가장 어려운 점 (2016), 출처 : 한국 교직원총연합

만 즉각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교사들의 진정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며 친고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피해교원이 고소를 취하하면 무마된다거나, 운영회가 열리기 전까지 학생을 계속 만나야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청소년의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요골자

학생의 정신적 ·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정신적 · 신체적 폭력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와 폭력 발생 후 교권 침해에 의한 피해 보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침해된 교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체적 폭력에 의한 교권침해상황에서의 즉각적 대처 방안)

①교사가 학생, 학부모에 의해 신체적 접촉에 의한 폭력을 당했을 시 교원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

- 1.즉시 주변교원과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격리한다.
- 2.가해자가 학생일 경우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로 소환한다.

3. 주변 학생과 교원들은 피해교원이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3조(교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각 학교 교원 중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해 교원의 교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경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효율성이 낮은 교권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존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2조 1항(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에서 정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교원폭력대책위원회의 기능을 겸하게 하되, 위원회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배제한다.

③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에게 행해지는 정신적·신체적 폭력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교원의 심리치료 및 전근지원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교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자치위원회의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3. 교원에 대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② 자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출석의원, 토의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③ 그 밖에 자치위원회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피해교원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지정 심리치료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치료
2. 요양을 목적으로 한 휴가
3. 전근
4. 그 밖에 피해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교사가 학생으로 의해 신체적 폭력을 당했을 경우 정부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유급휴가를 허용하고 대체교사를 투입해야 하며 학교는 학교의 장의 재량에 따라 가해 학생의 등교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해당교사의 수업시간에서 배제시킬 수 있다.

③ 피해교원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제1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교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교원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다.

④ 피해교원의 보호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범위, 구상범위,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5조 1항의 3호에 관한 부가설명)

해당 교원이 모욕감과 정신적 피해 등 심리적 사유 인해 해당학교에서 더 이상 근무가 불가하다 판단될 경우 정부는 해당 교원의 동의하에 남은 기간에 상관없이 타 학교로 전근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기는 공백 기간 동안 정부는 월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6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교원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

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교원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교원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② 제1항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가 피해교원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는 병과조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이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⑧ 가해학생이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⑨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⑩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교사의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⑪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자치위원회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⑫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재입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재심청구)

① 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제 4조 제1항 및 제 5조 제 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교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자치위원회가 제 5조 제 1항 제8호와 제9호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3항에 따른 심사 절차 및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재심청구, 심사절차, 결정통보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교원과 가해학생 본인이나 관계자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피해교원과 가해학생이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교원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분쟁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교원,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19조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바람직한 사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교원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서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